##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집필)

2022. 4. 20.

# 한 빛 미 디 어 (주)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집필)

저작물명: 내 손으로 만드는 주식 로보어드바이저

저작권자: 신기하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위의 저작권자를 '갑'이라 하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자 및 배타적 발행권자 한빛미디어(주)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제 1 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전송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모든 형식의 변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을'은 그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③ 이 계약에서 말하는 '전송'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권에 기반하여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인터넷 및 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전자책(e-book)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 3 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본 저작물의 초판 1 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 쇄 발행일로부터 5 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②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경우 복제·전송권은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까지 그리고 최초 디지털 파일 제작 완료일부터 5 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 ③ 계약 만료일 3 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 회에 한하여 3 년간 연장된다.
- ④ 본 저작물의 개정판, 증보판(출판 및 디지털 파일 제작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경우 그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본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예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을'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계약 유효기간 중에 인쇄된 재고도서를 12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전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계약 만료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중단하여야 하지만, 구매자가 이미 전송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제 5 조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과 동일한 제호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유효기간 중 '갑'은 어떠한 전집이나 선집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도록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을'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전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 6 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기한)

① '갑'은 2022. 9. 28.까지 본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완전 원고란텍스트뿐 아니라 책을 구성하는 화면 캡처나 도표, 그림, 사진 등과 부록으로 제공되는



자료(부록 CD 의 데이터 등)를 포함한 것으로, '을'의 편집자가 완전 원고로 인정하고 수령한 최종 원고를 말한다.

- ② 완전 원고는 3 회에 걸쳐, 1/3 분량은 <mark>2022. 6. 30.</mark>까지, 2/3 분량은 <mark>2022. 7. 30.</mark>까지, 3/3 분량은 <mark>2022. 9. 28.</mark>까지 각각 인도한다.
- ③ '갑'이 전항의 각 해당 기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에도 완전 원고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30 일 이내에 선불계약금을 반환한다. 단,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일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을'은 각 해당 기일에 수령한 원고가 주제, 독자층, 콘텐츠의 범위, 원고의 품질, 분량 등에서 최초의 기획 의도와 상당히 달라 '을'이 출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갑'은 '을'에게 선불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완전 원고를 인수한 후, 9 개월 이내에 본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수정 등 제작상의 사정 또는 발행 부적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발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공중송신(전송)의 이용에 의한 디지털 도서의 발행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7 조 (저작자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이 제 3 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 8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 ①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로 표시하여야 하며,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표현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 ② 단, '갑'은 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에 대한 '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 9 조 (교정, 수정, 증감)

① 본 저작물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출판에



적합한 형태로 다듬고 편집하는 것은 '을'의 책임이다.

- ② '갑'과 '을'은 본 저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의 출간 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용을 수정,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수정, 증감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③ 본 저작물에서 제목, 내용,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소제목 등 편집 과정에서 '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그 권리가 있다.

#### 제 10 조 (출판·배포·전송의 의무와 판매의 권리 등)

- ① '을'은 본 저작물을 출판·배포·전송할 의무를 갖는다. 단, 6 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일정 부수(단도/2 도의 경우 30 부, 4 도의 경우 100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물 및 디지털 파일 판매(전송)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 ③ '갑'은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 ④ '을'은 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갑'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11 조 (비용의 부담)

- ① '갑'은 본 저작물에 부수되는 도표·사진·그림·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본 저작물의 편집·교정·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 12 조 (출판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이하 '인세'- 등)

- ① '을'은 '갑'에게 본 저작물의 인세로 도서정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실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반기별(매년 6 월과 12 월 말일)로 정산하여 정산 이후 60 일 내에 지급한다.
- ② ①항의 실판매부수는 해당 기간 중 판매를 위한 출고부수에서 반품을 뺀 부수로 계산한다. (단, 최초의 정기인세 계산 시에는 반품과 신간배본부수(300 부)를 공제한다.) '을'은 반기별로 실판매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단, 초판 발행의 경우, 실판매와 관계 없이 초판 발행일로부터 60일 내에 발행부수의



80%에 해당하는 인세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인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을'은 본 계약에 대한 선불 계약금으로 금 <mark>일백만</mark> 원(₩<mark>1,000,000</mark>)을 지급하고, 이를 본조 ③ 항의 인세 지급 시 공제한다.
- ⑤ '갑'은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홍보, 서평 등을 위하여 무가로 제공한 도서에 대해서는 인세를 면제한다.
- ⑥ 본 계약에서 '갑'이 여러 명인 경우, 본조 제 1 항에서 정한 '갑' 사이의 인세 비율을 이후 제 13 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제 15 조 2 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의 이용허락, 제 16 조 해외 출판권 수출 등 모든 수익의 배분에 준용한다.

#### 제 13 조 (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 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전송에 따라 을에게 입금된 금액의 15%를 제 12 조 ①항의 기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단, 그 지급금액이 10 만 원 이하일 경우는 다음 지급일로 이월할 수 있다.
- ② '을'은 반기별로 판매내역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갑'에 대한 증정)

- ① '을'은 '갑'에게 초판 발행시 20 권을 증정한다.
- ② '갑'은 전항을 초과하는 인쇄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 제 15조 (2 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이 번역, 번안, 연극, 영화, 방송, 만화, 녹음, 녹화, 편집, '저작권법 제 25 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사용) 및 제 31 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따른 보상금',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경우 그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그 처리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조건(위임여부, 대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 3 자에 의하여 참조, 편집, 요약 등의 형태로 재사용되는 경우 '갑'은 그에 관한 이용허락을 을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갑'은 1 항의 2 차저작물 및 2 항의 재사용의 이용허락과 그 사무적 처리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하며 수익은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제반 경비 20%를 공제한 후 '갑'과 '을'이 5:5 로 배분한다. 이때 저작권자가 복수일 경우 각 저작권자의 인세율 비율에 따라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 제 16 조 (해외 출판권 수출 계약)

- ① '갑'은 본 저작물의 해외 출판권 수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며, 해외에 출판권이 수출된 경우 '을'이 수령한 수익금에서 저작권 수출 및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로 20%를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5:5로 배분한다. 단, '갑'의 노력으로 출판권이 수출된 경우에는 수익금을 '갑'과 '을'이 7:3으로 배분한다.
- ② 전항의 수익금이라 함은 수출 금액에서 세금과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제 17 조(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 ① '갑'은 제 1 조 및 2 조의 이용에 있어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출판용 데이터(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 ②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출판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 3 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본조의 규정은 '갑'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18 조 (개정판, 후속 저작물 등에 대한 협력)

- ① '갑'과 '을'은 본 저작물의 개정판을 출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단,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하에 제 3 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원고를 수정, 추가하여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 ② '갑'은 본 저작물의 후속 저작물 출판에 대해 '을'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제 19 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 ① '갑'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에 대하여 설정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 ②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 이전에 본 저작물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 책임을 진다.

#### 제 20 조 (재해·사고 등의 손실 처리)

- ① 천재지변, 전란, 화재, 기타 '을'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② 배포 또는 진열중인 도서의 소실·유실·침수·파손·낙장, 또는 위탁거래인의 파산, 기타에 의한 손실이 통상적인 한도 이상일 경우 '을'은 그 손실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인세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21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 22 조 (계약의 해제 및 소송의 합의관할)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상대방은 6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당사자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사정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법원으로 한다.

#### 제 23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제 24 조(특약 조항)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 조항을 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시 한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 부씩 보관한다.

2022. 4. 20.

저작권자의 표시('갑')

성명:신기하(원)

생년월일: 700911-1001512

주 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대로 130 번길 100, 1803 동 1201 호

계좌번호: 농협 302-1375-3723-51 예금주: 신기하 [용도: 저작권 사용료 지급]

연락처(핸드폰): 010-4550-8309 이메일: occam12345@gmail.com

출판권자 및 배타적 발행권자의 표시('을')

출판사명: 한빛미디어(주)

대표자 성명: 김 태 🎒

사업자등록번호: 220 81일05665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 길 62 한빛빌딩 B 동